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911호 2012. 11. 20(화)

◀ 고 시 ▶

○도로명 부여 고시 (제2012-112호) 2

◀ 공 고 ▶

○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(제2012-1644호) 6

○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(변경) 공람공고 (제2012-1663호) 1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2-112호

도로명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19일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- 1. 고 시 일 : 2012. 11. 19.
- 2. 고시방법 : 포항시 홈페이지, 시보,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
- 3. 고시내용 : 도로명 부여(홈페이지 참조)
- 4. 도로명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명 변경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→ 10일 이내	주민 의견 수렴 공고	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→ 10일 이내
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		14일 이상	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

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(서면 동의 생략 포함) → 10일 이내	고시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· 심의 결과 · 변경 내용 및 절차		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	서면 동의 만료일부 → 10일 이내	공고 및 신청인 통보
		주소사용자의 1/2 미만		결과 통보
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※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새주소 담당(☎054-240-3492~349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신설 도로구간]



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2-1644호

공 고

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1월 14일

포항시장 박승호

**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유도부 지도체제 정비로 체계적인 팀 운영 및 선수관리에 따른 트레이너 임용을 위한 정원 기준을 마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 조정(별표 1)
-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”에 따른 서식 정비 등

3. 관련법령

- 「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」

4. 규칙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12. 11. 14 ~ 12. 3(20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2. 12.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체육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- 보내실 곳 : 포항시청 체육지원과
포항시 남구 시청로 1(우편번호 790-722)

- 전화 : 054-270-2781, FAX : 054-270-2790

라. 제출서식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7. 기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@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 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5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2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4조 본문 중 “제22조 규정에 의거” 를 “제22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제1호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제2호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□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

종 목	계	총감독	유 도	육 상	조 정
총 계	38	1	16	11	10
총 감독	1	1			
감독	3		1	1	1
트레이너	2		1	1	
코 치	3		1	1	1
선 수	29		13	8	8

■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[별지 제1호서식]

입단지원서

본인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(○○단)에 입단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입단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이 취소 처분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인 적 사 항
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
	(한자)	전화번호	
주 소			
최종학력	년 월 일 졸업, 재학	학교(과 년)	
경 력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종사)	
주요경기 실 적			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포항시장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■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[별지 제2호서식]

서 약 서

본인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금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,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
3.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
4.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
5.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

년 월 일

주 소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포항시장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■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재직증명서

제 호			
인 적 사 항	성명	(한글)	생년월일
		(한자)	
	주소		
재 직 사 항	소속	포항시청	
	직위, 직급	시청직장운동경기부 (위촉직)	
	기간	년 월 일	일부 일 부터 일 까지 (년 개월)
용도			

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포 항 시 장 (직인)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■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[별지 제4호서식]

경력증명서

제 호						
인 적 사 항	성명	(한글)	생년월일			
		(한자)				
주소						
경 력 사 항	근무시간		직 급	직 위	근무부서	
	부터	까지				
근무년한	년	월	최종 직위 또는 직급			
퇴직사유						
상 벌 사 항	포상			징계		
	년월일	종류	시행정	년월일	종류	처분청
직 위 해 제	년월일		사유		처분청	
용도						

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포 항 시 장 (직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) ①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<u>제5조의</u> 규정에 의한 인사 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조(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) ① ----- -----<u>제5조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(생 략) ②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,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</p> <p>1. (생 략) 2. 훈련수당은 조례 <u>제12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, 감독코치는 매월 150,000원, 특급선수는 매월 500,000원, A급 선수는 매월 300,000원, B급선수는 매월 200,000원, C급선수는 매월 150,000원을 지급한다.</p> <p>3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</p>	<p>제13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</u> 따라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12조에</u>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전지훈련비) 단원에게는 <u>제22조의</u> 규정에 의거 전지훈련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숙박비, 현지교통비, 주식비, 목욕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전지훈련비) ----- <u>제22</u> <u>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8조(직권면직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 재임용 할 수 있다. ④ (생 략)</p> <p>제29조(휴직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③ (생 략)</p> <p>【별표1】 □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종목</th> <th>계</th> <th>총감독</th> <th>유도</th> <th>육상</th> <th>조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8</td> <td>1</td> <td>16</td> <td>11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총감독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감독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트레이너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코치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선수</td> <td>30</td> <td></td> <td>14</td> <td>8</td> <td>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목	계	총감독	유도	육상	조정	총계	38	1	16	11	10	총감독	1	1				감독	3		1	1	1	트레이너	1			1		코치	3		1	1	1	선수	30		14	8	8	<p>제28조(직권면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제1항제1호에 따라 ----- -----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【별표1】 □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종목</th> <th>계</th> <th>총감독</th> <th>유도</th> <th>육상</th> <th>조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8</td> <td>1</td> <td>16</td> <td>11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총감독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감독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트레이너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코치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선수</td> <td>29</td> <td></td> <td>13</td> <td>8</td> <td>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목	계	총감독	유도	육상	조정	총계	38	1	16	11	10	총감독	1	1				감독	3		1	1	1	트레이너	2		1	1		코치	3		1	1	1	선수	29		13	8	8
종목	계	총감독	유도	육상	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8	1	16	11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감독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독	3		1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트레이너	1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코치	3		1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수	30		14	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목	계	총감독	유도	육상	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8	1	16	11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감독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독	3		1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트레이너	2	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코치	3		1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수	29		13	8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포항시 공고 제2012-1663호

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(변경) 공람공고

포항 도시계획시설(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)사업 시행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공람일시 및 장소 : 포항시청 동빈운하건설TF팀(09:00 ~ 18:00)
3.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

사업명	위 치	사 업 내 용	시행기간	사업시행자
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	포항시 남구 해도동, 송도동, 북구 죽도동 일원	○ 사업면적 : 96,100㎡ - 유희시설 : 7,261㎡ - 휴양시설 : 7,814㎡ - 특수시설 : 2,247㎡ - 편익시설 : 14,045㎡ - 관리시설 : 12,440㎡ - 녹지 및 기타시설 : 52,293㎡	○ 당초 2009.6.25 ~ 2012.12.31. ○ 변경 2009.6.25 ~ 2014.3.30	○ 당초 포항시장 대한주택 공사사장 ○ 변경 포항시장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동빈운하건설TF ☎(054- 270-517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11월

포항시장 박승호